



REPUBLIK INDONESIA

인도네시아 청소년체육부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간 체육협력에 관한 양해각서

인도네시아 청소년체육부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(이하 “양측”이라 한다) 는

체육 분야에서 양국 간 기존의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증진하고 강화하기를 희망하며,

양국의 상호 이익을 위하여 체육 분야의 정보 및 프로그램의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며,

각 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,

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.

제 1 항 목 적

이 양해각서는 호혜와 상호이익의 원칙에 기반하여 체육 분야에서 양측 간 협력을 위해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항 협력 분야

양측은 다음의 분야에서 협력한다.

- 체육 분야 선수 및 코치 방문 교류
- 체육 분야 공직자, 전문가 및 연구원 방문 교류
- 양국에서 개최되는 초청 경기 참여
- 주요 국제 스포츠행사 개최 등 체육 분야 프로그램, 경험, 기술, 정보 등 교류
- 최신 도핑관리 정보 및 프로그램 공유를 통해 도핑근절 협력
- 기타 양측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협력 활동

제 3 항 이행

양측은 행동 계획, 운영 프로그램 또는 기타 상호 합의한 협의 등을 통하여 특정 협의의 발전을 통해 이 양해각서를 이행하기로 합의한다. 이러한 협의는 특히 제안 프로그램 및 활동, 재정 사항, 관련된 측의 책임 사항, 정보 교류 및 비밀 유지 등을 명시한다.

제 4 항 관계자 활동

양측은 이 양해각서 하에서 행해지는 활동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양국의 가치와 원칙을 존중한다는데 동의한다. 양측은 직원들이 이

양해각서의 의도와 목적에 일치하지 않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한다.

제 5 항 비밀 유지

1. 양측은 이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해 한 측이 제공하는 문서, 정보 및 기타 자료의 비밀 유지와 기밀 사항을 준수한다.
2. 한 측이 제 3 자에게 비밀 문서와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면, 해당 측은 상대 측에서 서면으로 사전 동의를 받는다.
3. 양측은 이 양해각서의 종료 후에도 이 항이 계속 유효함에 동의한다.

제 6 항 분쟁 해결

이 양해각서의 이행 및 해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또는 차이점은 양측 간 직접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.

제 7 항 수 정

이 양해각서는 양측 간 서면 교환을 통하여 수정될 수 있다. 이러한 수정 사항은 이 양해각서의 발효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, 이러한 수정 이전에 이 양해각서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약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
제 8 항
발효, 기간 및 종료

1.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, 5 년 간 유효하다. 또한, 이 양해각서는 양측이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여 다음 5 년 간 갱신될 수 있다.
2. 한 측이 약정 종료 직어도 6 개월 전에 상대 측에 서면 통보하여 양해각서를 종료할 수 있다.
3. 이 양해각서의 종료 또는 만료는 양측이 공동으로 결정하지 않는 한, 진행 중이거나 이 양해각서의 종료 또는 만료 시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사업이나 협력 활동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상기 문안은 이 양해각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양측이 협의하였음을 나타낸다.

2016년 5월 16일, 서울에서 인도네시아어, 한국어, 및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씩 서명되었다.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시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.

인도네시아 청소년체육부를
위하여

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를
위하여

Signed

RETNO/L. P. MARSUDI
외교부 장관

Signed

KIM JONGDEOK
장관